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확정 이후의 남은 과제는

- 투명한 절차, 범정부적 협조, 조세 감면 및 적극적 외자 유치 등 소망스러워 -

올해 민자 유치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자 참여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 외에 일본과 호주 등의 파이낸싱 업체들까지 국내 민자 유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자 사업이 곧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인프라 확충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취재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기반 시설이다. 기술 수준은 제외하더라도 교량이나 도로,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튼튼하고 미려하게 건설되어 있으며 추후 물동량 등을 감안해 여유고를 풍부하게 두고 있는 것 등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국의 혜안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도 성장기의 풍부한 세금을 토대로 너무 비싸게 인프라를 건설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만 가난해졌다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풍부하고 튼튼한 기반 시설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어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천년의 도시 로마나 백년의 도시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든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세계인에 회자되는 것은 바로 이미 2,300여 년 전부터 아피도가도(街道)를 비롯한 수많은 도로와 다리와 수도(水道)와 광장을 건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기초 인프라 시설들이 곧 로마 제국의 저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정복의 기반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인프라가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마다 고시하는 정부의 민자 유치 사업 기본 계획은 예산 타령을 벗어나 효율적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며 경제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민자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MD, '한국은 인프라는 중하위권'

지난 4월에 발표된 IMD(국제경영개발원)의 「2002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인프라는 평가 대상 49개 국가 중 28위에 머물러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 이는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이 게걸음 내지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960 70년대에 과감한 선행 투자로 압축 경제 성장을 선도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반 시설 투자를 상대적으로 소홀해 온 것이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인천국제공항 확장 사업을 비롯해 지하철, 경춘선 복선전철, 수계 치수 사업 등의 대형 기반 시설 사업이 설계와 계약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보다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

이처럼 예산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자 유치 사업 활성화로 국가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민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개혁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선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야 하며, 사업 표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민자 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건전하게 집행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민자 사업은 제안과 고시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되는데 먼저 제안 방식은 재차 제3자 고시를 수반해야 한다. 투명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특혜 시비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이후 실시 협약 체결 때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 등 민간 사업자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 관청이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에 협상 시한을 사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 제도화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활용

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용인 경량전철 및 고촌 월곶 간 도로 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는 투명한 절차 마련과 주무 관청의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때 협상 시한을 사전 제시하도록 해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그 성격상 미래 지향적인 선(先)투자가 바람직하다. 물류의 병목 현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투자의 효용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사업 시기는 놓치면 단기간에 그 보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도 막대해진다. 민자 활성화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관련 공무원의 협조적 자세 중요

둘째로 주무 부처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의 협조적 자세가 중요하다. 민자 유치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부처를 거쳐야 하며 담당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다지화되어 있는 공무원 등이 각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경우 사실상 민자 사업은 불가능하다. 총괄 부서가 원칙을 인정했다면 하위 부처나 관계자들은 사업 결정을 협조적으로 지원하고 부수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원칙조차 무시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무 관청 관계자는 물론 관련 부처 및 관계자의 개혁적 사고가 뒤따라야 하며 일사불란한 조직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로 외국인 투자 유치해야

셋째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 특례 적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 지원 서비스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대상이 고도 기술 수반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 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 기업, 수출자유 지역 입주 기업 등으로 한정 적용되고 있다.

또 감면 내용도 법인세·소득세 10년 감면 및 지방세 일부 감면 등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나 시장 리스크(사업 안정성 및 수익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국내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인정되고 있는 수준의 조세 특례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민자 법인의 법인세 감면도 검토해봄직

넷째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적극 검토해봄직하다. 현재 사회간접자본 시설 민자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법인세 27 %,주민세 2.7 %의 세율을 감면받고 있는 것. 민자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기존 공공 시설은 사용자의 편익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간 투자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함에 따라 사용료가 공공 시설보다 높으며 법인세 부과액만큼 추가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민간 투자 시설의 경쟁력 저하로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성이 위협받게 되고 민간 투자 사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자 시설 사용료 인하 및 재정 지원 규모 축소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민자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연간 18조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 즉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시급한 교통망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기반 시설 민자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본금 선투자 요건 재검토도

다섯 번째로 파이낸싱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자기 자본금 선투자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주무 관청이 출자자에게 타인 자본의 차입에 앞서 자기 자본금을 선투자하도록 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다양한 금융 조달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자본금 선투자 규정을 시설 사업기본 계획 고시에서 제외하고 자금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금 선투입 또는 자기 자본금 차입금 동시 투입 방법 등 사업성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대주단이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외에도 「민간투자사업지분법」을 재검토해 2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더라도 지분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최다 출자자의 최소 출자 비율 규제를 폐지하여 출자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참여하도록 하는 등 민간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것이 민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가나 개인의 미래 가치는 오늘의 현실적 투자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용동
내외경제신문 부동산팀장